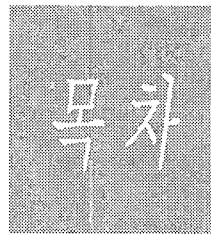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e-book)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김 기 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출판학)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문제의 제기2. 개정저작권법상의 출판관련 주요내용<ol style="list-style-type: none">2. 1 온라인상 저작물 송신에 대한 '전송권' 신설2. 2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전송 허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2. 3 디지털 복제의 수용2. 4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제외2. 5 저작권 등록업무에 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3. 결론적 논의 |
|---|---|

1. 문제의 제기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저작권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2000년 1월 12일자로 개정되어 7월 1일자로 발효된 현행 저작권법은 전반적으로 디지털 매체환경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야흐로 저작환경 또한 디지털 정보와 밀접한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추가된 ‘전송권(電送權)’은 기존의 여섯 가지 권리, 즉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에 있어 그것들의 이용환경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무한가상의 공간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인정한 결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전송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 일관성이 부족한 탓에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이를 둘러싼 대립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그 결과 저작권자들은 권리의 확대만을 주장함으로써 이용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고, 이용자들 또한 기득권과 새로운 권리 사이에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소모성 논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출판분야이다. 즉, 기존의 출판권과 신생권리인 전송권,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복제권에 관한 조항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출판권은 1957년에 개정된 구저작권법에서부터 줄곧 주요사항으로 명시되어 왔고,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제3장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매체환경을 반영하여 대폭 개정된 2000년도 개정법에서 출판권 조항은 단 한 군데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는 전통적인 매체로서 출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여전히 아날로그 매체로만 한정함으로써 출판매체의 디지털화 양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미 도처에서 이른바 ‘전자책(e-book)’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그 기술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마치 종이책의 장례절차가 논의될 듯한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저작권 전문가를 포함하여 많은 출판인들이 전자책의 기술적 문제에만 집착했지, 정작 그로 인해 생겨날 법적,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유수의 작가들이 전자책 개발업체와 앞다투어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을 맺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출판사들이 확보하고 있는 출판권마저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위기의식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출판권’으로는 새로운 ‘전송권’에 대항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출판권이 새롭게 조망되어야 함을 밝히고, 향후 저작권법 개정에 있어 디지털 출판의 개념이 전격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2. 개정저작권법상의 출판관련 주요내용

2. 1 온라인상 저작물 송신에 대한 ‘전송권’ 신설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전송’에 관한 정의규정(제2조 제9호의 2)의 신설과 함께 저작재산권에 ‘전송권’을 추가로 규정(제18조의 2)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송’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고 함으로써 새로운 권리로서의 ‘전송권’을 신설하고 있는 것이다.

‘전송권(電送權)’의 신설은 한마디로 디지털 환경이 무르익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송신이 보편화되고, 또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전달하는 형태의 기술진전은 새로운 권리의 등장을 촉진했던 것이다.

원래 전송권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을 수용한 것으로, 기존의 공연·방송·배포의 개념과는 달리 1대1, 이시송신(異時送信), 쌍방향성 및 무형성 등과 같은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서 우리 역시 디지털 송신으로서 ‘전송(Transmission)’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추가로 저작자에게 부여한 것이다.¹⁾ 또 전송에는 직접 송신뿐만 아니라 이용제공 행위도 포함되지만, 단순히 송신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위는 제외된다.

아울러 권리침해죄에 ‘전송’을 포함(제97조의 5)하여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벌칙의 강화라는 측면과 함께 디지털 매체환경을 법제적으로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2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전송 허용

또한 이번 개정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를 규정한 제28조를 부분개정하는 한편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

1) 따라서 전송권을 영문으로 표기한다면 아날로그 상황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Transmission Right’라고 하기보다는 엄격한 의미에서 ‘Digital Transmission Right’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출판계로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 동안 사실상의 무단복제가 도서관을 통해 성행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디지털 복제까지 허용함으로써 그로 인한 폐해가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28조 제2항은 2000년 개정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디지털 환경이 급속도로 정착됨에 따라 이른바 전자도서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일부 제한하여, 도서관 내에서 열람을 목적으로 디지털 복제 및 다른 도서관으로의 전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규정은 도서관 등이 저작권, 출판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제1항의 아날로그 복제가 가능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범위와 제2항의 디지털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제1항에서 외는 달리 제2항에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 단서 규정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 국립도서관²⁾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서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도서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도서관

한편,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 이외의 다른 도서관에서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으로부터 복제물을 전송받아 자체 서버에 저장하여 관내 열람용으로 서비스하는 행위는 자체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가 다시 디지털 복제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정한 것으로,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와 이용방법 내에서는 이용자가 도서관, 가정, 직장 등에서 도서관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새로 출범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전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³⁾

하지만 제28조 제2항에서는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을 벗어난 관외 이용자에 대한 전송은 물론 관내에

2) 여기서 말하는 ‘국립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그리고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산업대학교·전문대학 등의 도서관을 가리킨다.

3) 신창환, 「개정 저작권법령 해설」, 『개정 저작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회 자료집』(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 8. 9), p.9 참조.

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출력과 전산기억장치에의 저장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실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상 일단 저작자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복제의 용이성과 신속성, 그리고 전파(傳播)의 광범위성 때문에 권리침해 정도는 기존 저작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우려가 매우 높다. 이러한 디지털 속성을 고려해서 법으로 허용한 범위 이외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불법이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로서

- 당해 시설과 저작권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컴퓨터 등의 화면에 자료를 나타나게 하는 자료현시(資料現示) 이외의 방법으로는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 외의 자가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
 - 컴퓨터 등의 화면상의 자료현시 이외의 방법으로 도서를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 둘째,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 교육
- 셋째, 컴퓨터 등에 경고 표지의 부착

여기서 첫 번째로 규정한 기술적인 조치는 곧 복제방지장치, 암호화조치, 이용 및 변경 확인조치와 판매용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등의 설치로 요약할 수 있다. 복제방지장치란, 저작물에의 접근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이용방법 중에서 자료현시(screen display)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와 전송을 하는 것은 금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 암호화조치란, 저작물이 당해 도서관과 다른 도서관 이외의 장소에 유출되지 않도록 저작물을 특정한 형태로 변환한 뒤 이를 다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회복시키는 장치로, 도서 등을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 이외의 장소에 유출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 또한 이미 CD-ROM 등 전자기록매체의 형태로 유통되는 판매용 저작물은 저작자 및 매체제작자가 이미 상당한 투자를 기울인 결과물임을 고려해서 도서관에서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 복제의 경우 그것은 원본과 똑같이, 혹은 더욱 정밀하게 복제가 가능하고, 양적인 면에서도 거의 무한대라는 점에서 이번에 개정 또는 신설된 도서관 등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상호전송 허용규정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겉잡을 수 없는 무단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2. 3 디지털 복제의 수용

또한 ‘복제’의 정의규정에 디지털 복제를 포함(제2조 제14호 개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즉,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라고 하여 새롭게 복제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복제(*複製; reproduction*)는 저작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예시하고 있는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양상을 반영하여 2000년도 개정법에서는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이외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켜 디지털 복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다만,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이용시 거치게 되는 램(RAM)에의 저장과 같은 일시적 저장 행위를 저작권법상 복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접근법이 강구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개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주에 넣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시적 저장 행위가 저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⁴⁾

2. 4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제외

한편, 제27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사적이용(*私的利用, private use*)을 위한 복제’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고 있는 점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출판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 즉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적이용의 허용이 곧 복사기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던 업체들까지 면책됨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스스로의 필요 때문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이는 영리추구를 위한 대량복제처럼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가정에 준하는 소규모의 인원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므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고 한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단독의 개인은 아니지만 가정처럼 개인적 결합 관계로 모인 소규모 인원 - 대체적으로 10인 이내 - 으로서 폐쇄적으로 이

4) 김태훈, 「개정 저작권법 해설」(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0. 3. 30), 저작권강연회 자료집, p.7 참조.

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규모라 하더라도 회사 같은 곳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복사기, 녹음 및 녹화기 등의 대량보급과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복사기를 비롯한 복제기기의 출현은 원래 사무자동화(事務自動化)나 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지만, 지금은 그 이용 범위가 매우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제에 따른 비용 또한 저렴해짐으로써 이용자의 폭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 따라 저작물 및 출판물의 권리자들에게 위기의식이 생겨나고, 복사 및 녹음·녹화에 의한 복제물 제작이 심각한 저작권 침해의 요소를 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왜냐하면 일단 복제된 저작물은 사적 이용의 단계를 넘어서 많은 사람의 모임을 통해 교환(交換), 대여(貸與) 또는 판매(販賣)의 방법으로 반출(搬出)되기도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높은데도 그러한 행위들이 위법(違法)임을 인식시키거나 구체적으로 검증(檢證)하여 적발해 낼 수 없다는 문제 가 있기 때문이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적인 이용형태로는 아무래도 복사기에 의한 출판물의 복제일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사적이용의 범주를 넘어서는 행위를 가려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제27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이대로의 해석에 따른다면 미묘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느 개인이 문구점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물 또는 출판물을 복사하는 경우에 그 개인은 분명히 개인적 용도에 따라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적법(適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문구점 주인의 입장에서는 영리의 목적으로 복사해 준 것이므로 위법(違法)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개인이 복사기를 갖추고 있기 어려운 탓에 대부분 복사 전문 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에서는 복제기기(複製器機)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여 ‘사적복제보상금제도(私的複製補償金制度)’를 시행하고 있다.⁵⁾ 즉, 복제기기 - 복사기, 녹음기, 녹화기 또는 녹음 및 녹화용 수록 매체인 콤팩트디스크 등 - 를 생산하는 업체는 그러한 기기(器機)를 배포할 때 일정액의 보상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에 대한 논의 가 몇 차례 있었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⁶⁾ 그러던 중 2000년도 개정법에서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적 복제의 허용환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5) 독일에서는 복제기기가 제작되어 판매되는 시점에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사적복제보상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일본저작권협회가 중심이 되고 문화청이 지원하여 설립된 ‘복사권 센터’라는 기구가 있어서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6) 문화체육부,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1993. 6) 참조. 이에 따르면, 복제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맨 처음 배포할 때 일정의 보상금을 원천부과하며, 그 권리자는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그리고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로서 그 행사는 지정단체를 통하여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권리자 측의 주장과 복제기기 업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결국에는 개정 법률안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말았다.

사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허용규정은 저작물의 일반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가의 복사점 등에서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위탁하거나 무인복사기 등에서 저작물을 복사하는 것은 앞서 살핀 것처럼 복사기의 설치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당연히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2000년도 개정법에서는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되는 사적 복제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출판물 불법 복제로 인한 저작자 및 출판사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복사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예를 따라 이용자가 간단한 수속을 밟음으로써 저작물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집중 관리하는 복사권집중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권리자 단체가 연합하여 앞서 언급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⁷⁾를 창립한 바 있다.

2. 5 저작권 등록업무에 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

또 ‘출판권의 양도제한 등’에 출판권 설정등록을 명시(제60조 개정)함으로써 설정출판권의 등록에 따른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상속 및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한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절권의 설정 · 이전 · 변경 · 소멸 또는 처분제한’의 경우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규정(제52조 참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출판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제53조 참조).

물론 이때의 출판권 등록은 출판권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점은 명백하다.⁸⁾

7) 2000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저작자 및 출판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이용자와의 계약을 통해 저작권법에서 면책하고 있는 범위 이외의 저작물 이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집중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8) 원래 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없다. 다만, ‘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① 추정력: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사람은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 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등록권리자는 추정 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게 되며, 이러한 추정사실을 부인하려는 사람이 법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입증책임전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② 대항력: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등의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근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변동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변동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③ 보호기간의 연장: 무명 또는 널리 알리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성명등록을 하게 되면 보호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며, 단체명의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게 되면 창작 후 50년에서 등록된 공표연월일을 기준으로 50년이 되는 효과가 있다.

3. 결론적 논의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저작권법에 의하면 기존의 ‘출판권’과 이번에 신설된 ‘전송권’은 전혀 다른 것이다. 우선 출판권에 관한 규정과 전송권에 관한 규정 자체가 이질적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곧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의 설정’ 규정을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제1항에 따르면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판권과 이번에 신설된 ‘전송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즉,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전송에 관한 규정과는 부합하는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출판권설정이 되어 있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 저작재산권자가 임의로 전송권을 발휘하여 새로운 이용을 허락하더라도--여기서의 새로운 이용이란 곧 ‘e-book’을 포함한다-- 출판권자로서는 이에 저항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국 새로운 전송권 설정계약을 맺지 않는 한 우리 출판사들은 새로운 이용형태에 관한 권리를 모두 상실할 수도 있으며, 향후 개발업체들의 공세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복제의 여러 방법 중에서도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음(錄音) 또는 녹화(錄畫)에 의한 복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문서 또는 도화’라고 하여 그것이 서적(書籍)이나 잡지(雜誌) 또는 화집(畫集)이나 사진집(寫眞集), 그리고 악보(樂譜)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제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이 선보이고 있는 비종이책, 즉 오디오북 또는 비디오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나 CD-ROM,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전자책(e-book)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출판이란, “저작물을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문서 또는 도화의 형태로 복제해서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출판권’이라 하며, 그러한 출판권을 복제권자로부터 설정받은 사람이 곧 ‘출판권자’가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형태의 도서는 현행 저작권법상의 출판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저작권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 또는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 제2조 정의규정에 ‘출판’을 신설

- 출판 :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과 전자적 장치로써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전송에 의하여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기존의 도서⁹⁾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장 ‘출판권’ 관련조항을 개정

- 제54조 제1항 ‘출판권의 설정’ : 저작물을 복제·전송·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 및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합리적인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출판계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현재로서는 기존의 출판권설정계약서와 함께 전송권설정계약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상의 ‘출판권’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려는 노력, 더 나아가 정의규정에 전자형태를 포함하는 ‘출판’ 또는 ‘도서’에 관한 명시규정을 신설하려는 노력이 범출판계의 염원으로 가시화되고, 다음 저작권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법제화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9) 이 같은 정의적 표현이 가능하려면 우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비롯한 일련의 관련법률에서 우선 출판을 전자책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기태,『출판저작권 현장연구』(서울:타래, 1994)
- 김기태,『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 학위 논문, 2000.2.
- 김기태,『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서울:삼진기획, 2000)
- 김태훈,『저작권법 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출판문화> 1999년 11월호(서울:대한출판문화협회)
-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연감(자료편)』(서울:대한출판문화협회, 2000)
- 문화관광부,『저작권법 개정안 자료집』(서울:문화관광부, 1999.8.)
- 박문석,『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서울:지식산업사, 1997)
- 송영식·이상정,『저작권법개설』(서울:화산문화, 1997)
- 오승종·이해완,『저작권법』(서울:박영사, 1999)
- 윤준수,『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대전환』(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 이기수·안효질,『인터넷과 저작권』,『계간 저작권』, 1999년 여름호
- 이상정,『디지털시대의 저작권법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계간 저작권』, 1998년 봄호
- 이상정,『저작물의 보호범위』,『계간 저작권』, 1999년 봄호
- 이용준,『디지털 혁명과 인쇄매체』(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 장인숙,『저작권법원론』(서울:보진재출판사, 1989)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저작권표준용어집』(서울: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3)
- 최경수,『멀티미디어와 저작권』(서울: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 한승현,『저작권의 법제와 실무』(서울:삼민사, 1988)
- 한승현,『정보화시대의 저작권』(서울:나남, 1992)
- 허희성,『신저작권법축조개설』(서울:법우사, 1988)
- M. Ethan Katsh; 김유정 역,『디지털시대의 법제이론』(서울:나남출판, 1997)
- Nicholas Negroponte; 백욱인 역,『디지털이다』(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1996)
- Rogert Escarpit, 김광현 옮김,『정보와 커뮤니케이션』(서울:민음사, 1996)
- Wilson P. Dizard, Jr., Old Media, New Media: Mass Communications in the Information Age(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Inc., 1997); 이민규 역,『올드미디어 뉴미디어-정보화시대의 매스커뮤니케이션』(서울:나남출판, 1997)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